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미사시간	주일	토요일 주일 : 19:00	
			06:30 (새벽)	10:30 (교 중)
			12:00 (중·고등부)	15:00 (유·초등부)
			18:00 (청 년)	21:00 (밤)
		평 일	06:30 (새벽), 19:00 (저녁), 목요일 10:00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 팩스 857-8549	예비자 교리	일요일 오전 09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 아 세 례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연령회 회장	김인기 베드로 010-5311-7604/869-5965		

● 모임

단체명	일시	장소
울뜨레아	10월 26일(일) 11:40	교육관
성모성심회	11월 01일(토) 17:30	교육관

● 알림

- 오늘(10월19일)은 전교주일로서 2차헌금이 있습니다

● 다음 주일(10/26) 청소 담당 : 6구역

● 예비자 교리반 모집

- 첫모임 : 11월 2일(일) 9시 1교리실
- 세례식 : 2026년 부활 대축일
- 신청 : 본당 사무실

● 위령의 날 전례 안내

- 11월1일(토) 저녁주일미사는 위령의 날 미사로 봉헌됩니다. 11월 2일(일)은 세상을 떠난 영혼들을 위해서만 미사봉헌이 가능합니다.
- 위령의 날 접수마감 : 2025년 10월 30일까지

● 수지계산서

2025.09

수입		비용	
계정 과목	금 액	계정 과목	금 액
봉헌금	516,988,940	선교비	335,120,275
후원금	8,729,720	성무활동비	78,775,430
목적헌금	26,220,970	교육비	3,985,000
기부금	1,504,451	자선찬조비	20,573,210
부속기관수입	7,700,000	지정지원비	5,820,000
기타수입	66,835,504	행사비	32,791,700
운영수지차액	117,836,369	인건비	133,415,701
		회의비	2,704,600
		운영비	79,820,100
		세금과공과	6,056,788
		복리후생비	9,980,550
		기타	36,772,600
합계	745,815,954	합계	745,815,954

● 제62주년 구로3동 성당 본당의 날

- 일시 : 10월19일(일) 교중미사후
- 온가족과 함께하는 본당 축제
- 본당의 날 미사 안내

10월 19일 (일)	06:30, 10:30, 18:00, 21:00 (12:00, 15:00 미사는 없습니다.)
-------------	--

● 노인대학 가을소풍 안내

- 일시 : 10월 30일(목) 오전 9시
- 목적지 : 강화 동막해변
- 출발장소 : 본당앞

● 2026년 달력 광고 모집

- 2026년 본당 달력 광고를 모집합니다. 신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접수처 : 본당사무실 02-857-8541

● 우리들의 정성(10월 01일 ~ 10월 14일)

교무금	13,368,000원
주일헌금 현금	9,608,000원
하상앰	10,000원
2차헌금	2,166,000원

- 감사헌금
이일기20만원 강○○ 5만원 황금옥 5만원
조성옥10만원 나경민20만원 신윤옥10만원
홍연실 5만원 김경자 5만원 김기에 5만원
권정자10만원 강요순 5만원 박재호10만원
김순애 5만원 신중구 5만원 이영희 5만원
심명숙 5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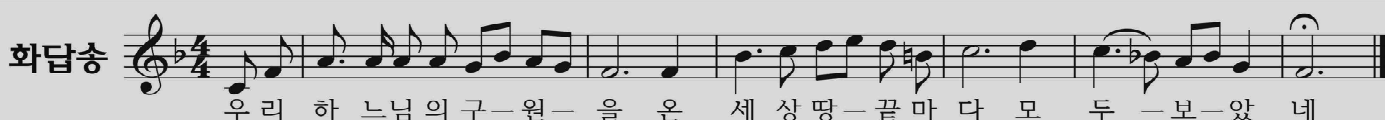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 일	해설	복사	독서
10/19	백희자	김영균	임종윤
10/26	이영민	김영균	장희석

● 성체 분배자 명단

월 일	토요주일	06:30	10:30
10/19	도현만	김용진	하재민
10/26	박승환	도현만	김영균

성가번호 ♪ 입당 : 467 ♪ 예물준비 : 340, 510 ♪ 영성체 : 501, 164 ♪ 파견 : 454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제 2 편 전례와 성사

제 2 장 성 사

제 7 절 혼인성사

제 4 관 혼종혼인

제 110 조 (미신자 장애)

- 1항 가톨릭 신자와 비영세자 사이에 맺는 혼인은 무효이다(교회법 제1086조 참조).
- 2항 사제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미신자 장애를 관면할 수 있다(교구사제 특별권한, 제16조; 사목회의 가정사목 의안, 51항 참조).
- 3항 가톨릭 신자와 비영세자 사이에 미신자 장애를 관면받고 맺는 혼인은 성사가 아니다(교회법 제1055조 2항; 사목회의 가정사목 의안, 44항 참조).

제 111 조 (혼종혼인)

- 1항 가톨릭 신자와 비가톨릭 영세자 사이에 맺는 혼인은 금지된다(교회법 제1124조; 사목회의 가정사목 의안, 44항 참조).
- 2항 사제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혼종혼인을 허가할 수 있다(교회법 제1125조; 교구사제 특별권한, 제16조; 사목회의 가정사목 의안, 46.47항 참조).
- 3항 비가톨릭 영세자의 세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제는 혼종혼인의 허가와 함께 미신자 장애의 관면까지 겸하여야 한다(한국 천주교 공용 지도서, 제336조 참조).

제 112 조 (서 약)

- 1항 가톨릭 신자가 미신자 또는 비가톨릭 영세자와 혼인하려는 경우에는 혼인 전 당사자의 진술서를 작성하는 때에 혼인 당사자가 그 진술서 제9항대로 가톨릭 신자는 서약하게 하고 상대방은 그 서약을 인정하게 하여야 한다(교회법 제1125.1126조 참조).
- 2항 부부의 신앙과 이념이 다르면 부부의 영육간 일치가 어렵다. 따라서 당사자들의 서약과 인정은 진실된 것이어야 한다(사목회의 가정사목 의안, 48-50항).

제 113 조 (관면혼인)

- 1항 가톨릭 신자가 미신자 또는 비가톨릭 영세자와 혼인하는 경우에도 가톨릭 예식으로 거행하여야 한다.
- 2항 가톨릭교회 예식 전이나 후에 순차적으로나 합동으로나 다른 종교 예식으로 혼인 예식을 이중으로 거행할 수 없다(교회법 제1127조 3항 참조).
- 3항 가톨릭 신자와 미신자 또는 비가톨릭 영세자와의 혼인식은 말씀의 전례로 집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비가톨릭 당사자가 미사를 이해하고 청하는 경우에는 혼인미사를 집전해줄 수 있다. 다만 비가톨릭 당사자에게는 성체를 영해주지 못한다(교회법 제1118조; 혼인 예식서, 8항; 교구사제 특별권한, 제17조 참조).

제 114 조 (가톨릭 혼인 예식의 관면)

가톨릭 신자가 미신자 또는 비가톨릭 영세자와 혼인하는 경우에 가톨릭 혼인 예식을 거행할 수 없다면 가톨릭 신자의 신앙이 위험하다. 그러므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구 직권자와 상의하여야 한다. 교구 직권자는 주교회의가 전국적으로 정한 일률적 기준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교회법 제1127조; 교구사제 특별권한, 제23조 참조).